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09
----------	------

2021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1. 8. 11.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1. 8. 19.
4. 상정일자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1. 9. 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 동 기금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 지출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활동의 175% 규모인 734억 7,900만 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 수입계획 변경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759억 7,100만원에서 1,525억 7,700만원으로 766억 500만원 증액하였고
-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대응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이차보전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190억원에서 254억원으로 64억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을 20억원 증액하였음
-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코로나 19 확산 대응 시중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비용자성 사업비'를 570억 7,000만원에서 685억 9,700만원으로 115억 2,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을 392억 100만원에서 1,126억 8,000만원으로 734억 7,900만원 증액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709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0년도 결산결과 조정된 예치금과 2021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 나. 코로나19 확산 대응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시중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편성

○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 / 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합	계	298,894	383,900	85,006
중소기업 금융지원		257,070	268,597	11,527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55,300	66,800	11,500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63	190	27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000	1,000	-
재무활동		41,819	115,298	73,4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여유자금 예치	39,201	112,680	73,479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항 목	당 초 (A)	변 경 (B)	증감(B-A)	
합 계	298,894	383,900	85,00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0,923	200,923	-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	
예 치 금 주 회	75,971	152,577	76,605	
일반회계 전 입 금	19,000	25,400	6,400	

지출 계획				
항 목	당 초 (A)	변 경 (B)	증감(B-A)	
합 계	298,894	383,900	85,006	
사 업 비	융자금	200,000	200,000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55,300	66,800	11,500
	시스템유지보수	163	190	2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 수수료	1,000	1,000	-
재 무 활 동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예치금	39,201	112,680	73,479
행정운영경비		5	5	-

3.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766억 500만원과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64억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766억 500만원)와 일반회계 전입금(64억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734억 7,900만원)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115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2,700만원)에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당초보다 4.4%, 115억 2,700만원 증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②**재무활동**의 경우, 당초보다 175.7%, 734억 7,900만원 증액되어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 7), p.43, p.302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계	298,894	383,900	85,006	-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257,070	268,597	11,527	4.4
재무활동(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41,819	115,298	73,478	175.7
내 부 거 래 지 출	2,618	2,618	-	-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
보 전 지 출	39,201	112,680	73,478	187.4
여 유 자 금 예 치	39,201	112,680	73,478	187.4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5,000	5,000	-	-

※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09 ('21. 8. 25) 재구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1. 9.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709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도 결산결과 조정된 예치금과 2021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코로나19 확산 대응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시중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편성

○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합 계	298,894	383,900	85,006
중소기업 금융지원	257,070	268,597	11,527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55,300	66,800	11,500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63	190	27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000	1,000	-
재무활동	41,819	115,298	73,4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여유자금 예치	39,201	112,680	73,479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계	298,894	383,900	85,006	합계	298,894	383,900	85,00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0,923	200,923	-	사업비	융자금	200,000	2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이자보전금	55,300	66,800	11,500
					시스템유지보수	163	190	27
예치금 회수	75,971	152,577	76,60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7	607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000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19,000	25,400	6,400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운입예금상환	2,618	2,61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예수금	-	2,000	2,000	예치금		39,201	112,680	73,479
				행정운영경비	5	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2133-5190)